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25 선고 2024가단186 판결 [건물명도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3. 8. 15.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최지경

별지